

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08. 24

제출자 : 이정율 의원 외 4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1년 9월 2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-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11년 9월 2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장문혁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이정을 의원,
정문섭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2011. 8. 30 (화)	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.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.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.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.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	